「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2. 4(화) 이정율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12.. 1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이정율 의원)

○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○ “아동” 및 “지역아동센터”등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

-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.
- “지역아동센터”란 「아동복지법」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함.

○ 센터의 설치(안 제4조)

-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「아동복지법」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.

○ 사업 및 사업비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주요사업

·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 · 정서지원 활동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과
- 센터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, 아동 급식비 등 아동센터운영 및 기타 필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